2005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

審 査 報 告 書

의안 번호	623

2004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1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1)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 12월 13일)
안건상정, 정무부시장 인사말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 12월 14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질의·답변

(3)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2004년 12월 14일~12월 15일)

(4)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 12월 15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경영기획실장 이철수)

가. 제안이유

□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어 총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2005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조 8,262억원으로서 금년대비 2,962억원이 감소하였음.

다. 2005년도 기금운용내역

○ 융자·경상지출 등 사업비로 1조 7,679억원

○ 차입금 원리금상환 2,642억원

○ 기금관리비 116억원

○ 기타 예비비 등 여유자금 7,825억원임.

라.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

○ 재정투융자기금 1조 1,67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4,811억원

○ 식품진흥기금 625억원

○ 도시가스사업기금 290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757억원

○ 여성발전기금 43억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3억원

○ 사회복지기금 179억원

○ 체육진흥기금 80억원

○ 감채기금 6,424억원

○ 재해재난대책기금 3,132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04억원

○ 신청사건립기금 54억원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

가.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13개 기금으로 늘어 났으며, 13개 기금에 일반·특별회계의 출연금, 예탁금 및 타기금의 차입금 등으로 운용 전체규모는 2조 8,262억 9백만원임. 이는 2004년대비 9.5% 감소(△2,962억 3백만원)한 규모임.

◈ 2005년도 예산(안)의 기금출연 및 예탁내역 ◈

(타기관 지원 등 예산내역 참조)

○ 일반회계 : 1,186억 6백만원

- 재해재난대책기금 822억 5천 9백만원
  - 구호계정 164억 5천 2백만원 (보통세 前 3년 징수평균액의 0.25%)
  - 재해계정 526억 4천 5백만원 (보통세 前 3년 징수평균액의 0.8%)
  - 재난계정 131억 6천 2백만원 (보통세 前 3년 징수평균액의 0.2%)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노인・청소년・주거계정) 30억원
- 여성발전기금 3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3억 4천 7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50억원 (적립기금 : 목표 500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

○ 특별회계 : 3,715억원

- 주택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225억원
- 도시개발(재정투융자기금 예탁) 2,490억원

□ 전체 운용규모 2조 8,262억원중 융자지출 1조 165억원을 포함한 사업비가 1조 7,679억원(62.6%), 특별회계 및 정부재정자금 등 차입금상환 2,642억원(9.3%),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지출 116억원(0.4%), 그리고 예비비성격의 여유자금이 7,825억원(27.7%)임.

□ 2005년도 기금별 주요사업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정투융자기금은 수도사업에 73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0억원, 도시개발공사에 1,500억원, 지하철양공사에 2,000억원 융자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설자금 융자 3,200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600억원 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에 50억원과 기타 사업비(식품위생업소 사업 지원 등)에 51억원 지원 등

○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융자 (5개 도시가스회사)에 70억원 등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사업에 427억원 등

○ 여성발전기금은 공모사업(지정공모, 자유공모)에 7억 3천만원 등

○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개(노원, 양천,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사업비 92억 6천 6백만원 등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에 5억 5천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8억원, 청소년복지사업에 5억 7천 5백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8억 5천만원, 주거지원사업에 63억원 등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764억 8천 5백만원, 지하철운영기관 출자에 5,650억원 등

○ 재해재난대책기금은 재해사업에 300억원, 구호사업에 2억원, 재난사업에 2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함.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개발용역에 1억원을 지원함.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근거)	설치 년도	목 적	운 용 규 모		
			2005	2004	증 감
계(13개)			2,826,209	3,122,412	△296,203
재정투융자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2	·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	1,167,024	1,257,184	△90,160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제43조)	1965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481,146	509,043	△27,897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제71조)	1989	· 식품제조업소 및 음식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62,489	54,512	7,977
도시가스사업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2	·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배관시설비 융자	29,004	57,155	△28,151
도로굴착복구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64	·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의 원활화	75,702	93,852	△18,150
여성발전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6	·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 및 지위향상	4,343	4,206	13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 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제21,22조)	1996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9,266	7,890	1,376
사회복지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9	·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특정계층 지원과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 및 주거안정 도모	17,939	30,902	△12,963
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2001	·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7,962	7,040	922
감채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2002	· 부채규모 감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원리금 상환·지원	642,408	816,952	△174,544
재해재난대책기금 (재해구호법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 재난관리법제56조)	2003	·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313,185	267,911	45,274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2004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10,353	10,000	353
신청사건립기금 (지방자치법제133조)	1996	· 신청사 건립재원의 확보(적립)	5,388	5,765	△377

□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기금정비방안 강구대책과 맞물려 지방기금 설치의 남발을 막고, 기금의 합리적 관리체제 마련 등 지방재정의 혁신을 위해 2005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된 지방기금기본법(“지방자치단체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아울러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기본방향에 따르면 기금의 체계적인 정비, 기금의 활용도 제고, 기금의 합리적 운용 등 지방기금제도 개선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기금제도 전반에 대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분권 등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기금은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2002년 18개기금→2005년 13개기금)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금수 감소가 기금출연규모의 축소로 연결되지 못하고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서울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반증임.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임.

◈ 연도별 기금출연규모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출연액	772,546(6)	851,209(6)	874,864(8)	118,606(7)

※( )는 출연된 기금수이며, 2005년도는 감채기금과 추경예산이 포함되지 않음.

□ 서울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금융·회계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계약"가급", '02.12)를 채용·배치함으로써 수익성(약 14억원)을 창출하는 등 전문성 강화로 여유자금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시 개별기금 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지적사항(전체의 약15% : 2001년 8건, 2002년 7건, 2003년 5건)이 있으므로 최근 3년간 기금적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목적달성이 어려운 신청사건립기금과 최근 3년간 운용 규모가 감소되고 있고 실효성이 미약한 도시가스사업기금(2004년 9월말현재 도시가스보급률 95%), 가동실적(양천31%, 노원19%, 강남16%)이 저조한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기금존치의 실효성 결여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를 신중히 검토할 단계임. 융자성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자금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있으므로 통합 운용을 추진하는 것이 민간 융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며 특히,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능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4.5~5.0%)가 일반시중은행(6.5~9.5%)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기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SOC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4년도에 폐지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법정기금(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임의기금(지방자치법 제133조)인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도 이와 유사한 서울복지재단, 서울여성재단의 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매년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오해와 갈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일반예산에서 중복 지원된다는 부정적 측면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금과 예산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기금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렇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기금뿐만 아니라 기금신설시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동기한을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하고, 종기일 이전에 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 시행여부를 의회가 필요성을 인정, 승인하는 경우외에는 자동 소멸시켜 일반회계로 편입함으로써 예산 전출금을 감소시키는 기금 일몰제도(Sunset-system)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가. 심사경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2004.12.14)

○ 위원장 : 정홍식

○ 위　원 : 박병구, 정승우, 김종문, 김종화, 김황기, 성무원, 송창대, 신영선, 유승주, 이국희, 장영호, 조일호, 이강일

□ 계수조정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일　　시 : 2004. 12. 14(화) ~ 12. 15(수)

○ 장　　소 : 시청 서소문 제1별관 회의실 (12층)

○ 참석인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14명

○ 내　용 : 기금별 계수조정 심의

나. 기금운용계획(안) 내용 : 원안가결(2004.12.15)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